HO BAN 호반건설

김포한강도시 Ab-21블록 호반베르디움 입주자모집공고

VERTIUM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이 주택은 2016.08.1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09.29 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있어 많은 주의 부탁드립니다.
  - 청약 순위제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년 경과 1납입' 에서 '24회 납입' 으로 변경 → 만연수제 특별공급 신설)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세대주 요건 충족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등
  - 청약 순위제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발생 요건 완화 : 기존 '1. 2. 3순위' 방식으로 간소화 / 수도권 1순위 발생 요건이 기존 '2년 경과 1납입' 에서 '24회 납입' 으로 변경 → 만연수제 특별공급 신설)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등
- 입주자저축 명칭 변경 : 청약저축 → '청약통장(국민주택)', 주택부금 → '청약통장(민영주택)', 종합저축 → '청약통장(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주택공급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 과열지구 지정(「주택법」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형사고발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주택 및 분양권은 몰수 또는 추가한 부동산업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청 주택과 – 44747호(2016.9.29)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신도시 Ab-21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15~18층 4개동 총 2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2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6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7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세대별 대지지분(㎡)	최하층 적용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합계	특별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자	일반 공급	
민영주택	2016001250-01	70.9895	70.9895	24.3127	95.3022	39.1928	134.4950	79.5743	34	3	3	3	1	24	1	2018년 9월
	2016001250-02	84.8559	84.8559	28.0204	112.8763	46.8484	159.7247	95.1176	232	23	23	23	6	157	1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층)

주택형	구분	공급세대수	층구분	분양가격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0% 계약시	1회 2016.11.22	2회 2017.01.03	3회 2017.03.03	4회 2017.05.02	5회 2017.08.03	6회 2017.12.04	입주지정일 2018.04.03
70.9895	59	70	1층	1,120,387,000	164,813,000	285,200,000	12,000,000	16,6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28,400,000	86,200,000
			2층	1,120,387,000	174,313,000	294,700,000	12,000,000	17,5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29,400,000	88,800,000
			3층	1,120,387,000	183,913,000	304,300,000	12,000,000	18,5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30,300,000	92,000,000
			4층	1,120,387,000	190,213,000	310,600,000	12,000,000	19,1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31,000,000	93,500,000
			기준층	28	1,120,387,000	196,513,000	316,900,000	12,000,000	19,7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31,600,000	95,600,000
70.9895	84~1	94	1층	1,120,387,000	169,813,000	290,200,000	12,000,000	17,1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29,000,000	87,900,000
			2층	1,120,387,000	178,913,000	299,300,000	12,000,000	18,0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29,900,000	90,800,000
			3층	1,120,387,000	187,913,000	308,300,000	12,000,000	18,9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30,800,000	93,700,000
			4층	1,120,387,000	193,913,000	314,300,000	12,000,000	19,5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31,400,000	95,300,000
			기준층	28	1,120,387,000	199,913,000	320,300,000	12,000,000	20,1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32,000,000	97,300,000
84.8559	84~2	138	3층	1,120,387,000	208,139,000	328,526,000	12,000,000	20,9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33,500,000	105,600,000
			4층	1,120,387,000	213,498,000	357,400,000	12,000,000	20,8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400,000
			기준층	106	1,120,387,000	204,798,000	354,700,000	12,000,000	20,0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34,200,000	106,800,000

※ 공통사항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다 이하 유효하시어 청약시청 바랍니[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 · 호별로 해당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적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동별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준공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순위 청약은 '인터넷 청약'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청약을 위해서는 인터넷청약 기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가상은행에 '2순위 청약신청'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4인 세대원 기준표준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 기준이며 실제 세대원수와 무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주택'이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소유여부 확인을 위해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라 주택소유확인서류 제출 및 관련 전산망 조회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따라 주택소유확인서류 제출 및 관련 전산망 조회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 및 계약체결